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요구서류의 최소화 및 기업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1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6.
3. 회부연월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등).
- 다.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 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민, 기업 등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요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기업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43조의2제8항,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현행과 같음)

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2(요구서류의 최소화)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서비스를 접수·처리할 때에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주체의 본인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그 행정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 기업 등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요구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정보의 확인, 구비서류 요구현황 점검 및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 ⑦ (현행과 같음)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

※관련 조문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관련 조문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③
(생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

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금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생략)

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⑧ 정보주체 및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은 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⑨ -----제8항-----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43조의3(기업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기업(「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해당 기업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정보”라 한다)를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지정하는 자로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자(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제3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도록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기업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업정

	<u>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u> <u>1.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있을 것</u> <u>2.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업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업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u>
--	--

현행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¹⁾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원칙²⁾으로 하고 있음.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사무, 내부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생략)

② (생략)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동 원칙에 따라 현행법 제5조에서는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³⁾되도록 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원칙을 재확인(제36조)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37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제38조)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절차(제39조 및 제41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42조) 등에 관한 규정들을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관등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개인, 기업 등에게 요구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의 주체를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외에 기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중복제출요구금지 사항과 결합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활용을

3)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략)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12. (생략)

③·④ (생략)

보다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36조의2제3항 중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국 행정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같게 적용할 것인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율성 측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행정서비스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43조의3은 “기업”의 범위를 괄호 안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⁴⁾ 및 「소득세법」 제168조⁵⁾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에는 현행법 제42조⁶⁾에 따른 정보주체 외에 법인, 단체,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⑫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6)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

및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정보주체 및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고 권익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안 제43조의2제4항 단서에, 기업에 대해서는 제43조의3에 별도 항을 신설하여 각각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⁸⁾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생략)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⑧ (생략)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⑨ (생략)

문 의 처
02)6788-5339